

KERI Brief

부자 증세(슈퍼리치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최 근 부자 증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본고는 부자 증세(슈퍼리치세)의 개념과 정책적인 의의를 살펴보고,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주요 외국과 비교하고 고소득자의 세부담 누진 현황을 분석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이미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 원 이상자)의 세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배 내지 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오고 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21.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고소득자가 2.2%의 소득 비율로 13.3%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어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것, 즉 부자 증세는 세부담 편중을 심화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 시점의 부자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할 경우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세부담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이르게 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프랑스의 부자 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부자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증세 논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및 세율 인상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도 필요하며, 재원 마련은 고소득자 같은 일부 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가 안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등 세원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가 효과적이고 진정한 조세형평을 이루는 방법으로 보인다.

1. 검토 배경

□ 최근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슈퍼리치세)에 대한 논쟁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자 증세에 대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음.

- 20대 국회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및 정의당 의원들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을 발의하였음.

○ 더민주 박영선 의원안(5억 원 초과, 39%~41%; '17년부터 1%p씩 단계적 인상),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안[3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41%) 및 10억 원 초과(45%)], 더민주 제윤경 의원안(10억 원 초과, 50%), 정의당 노회찬 의원안[4천 6백만 원 초과 8천 8백만 원 미만(25%) 및 1억 5천 초과 (45%)]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 야당은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을 가중시켜 경제활동 의욕 및 소비 감소는 물론 자본의 국외 유출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음.

- 2013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는 부유세가 저축을 징벌하는 제도라고 평했고,¹⁾ 부유세에 대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초과하면 저축이 감소한다는 주장²⁾도 있어 저축 감소가 경제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함.

- 또한 부유세는 국외로의 자본 유출을 초래하며, 자본이 빠져나가는 만큼 민간투자도 감소하여 일자리도 줄게 될 것이라고 함. 국가 간 세부담 격차가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임.³⁾

□ 이와 같은 논쟁은 우리나라 소득세율의 국제수준이나 최근 개정추이 및 고소득자의 세부담 가중에 대해 간과하고 있기에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이명박 정부부터는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오고 있음.

- 또한 전체 소득세 납부액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상황이므로 고려되어야 함.

- 본 연구는 부자 증세(슈퍼리치세)의 개념과 정책적인 의의를 살펴보고,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주요 외국과 비교하고 고소득자의 세부담 누진 현황을 분석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시하여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요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Robert Shiller, The New Financial Order – Risk In the 21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10.

2) 닷 자임 스톡홀름대 교수는 2000년부터 7년간 스웨덴 납세자 5100명을 대상으로 부유세 부과 기준 변화에 따른 자산 축적을 조사했음. 2001년 조사에서 독신자들의 순자산은 부유세(1.5%) 부과 기준인 100만 크로네(약 1억 4000만 원)를 기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부유세 부과 시점까지만 자산을 축적하고 이후에는 추가로 저축하려는 유인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임. 하지만 부유세 부과 기준이 150만 크로네(약 2억 원)로 늘어난 2006년 조사에서는 개인 순자산이 100만 크로네에서 150만 크로네 구간에서 대폭 늘었음(피케티가 못 본 '부유세 함정'...저축을 떨어지고 國富 유출도 심각, 한국경제신문, 2015.1.11. 보도 참고).

3) 조경엽,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16.

2. 부자 증세(슈퍼리치세)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 먼저 우리가 '부자 증세'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부자 증세는 슈퍼리치세, 부유세 또는 버핏세라고 불리며,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이상의 순자산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함.

- 슈퍼리치세는 10억 원 이상의 순자산 또는 소득을 가진 슈퍼리치(Super-Rich, 소득 상위 0.01%를 말함)에게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 부유세(Net Wealth Tax)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순자산액(총자산 - 총부채)의 일정비율을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함.

- 버핏세(Buffett Rule)⁴⁾는 배당과 자본이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세율 인상과 과세소득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추가세율 부과방안을 제안하는 등 고소득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부자 증세를 말함.

□ 부자 증세의 도입 배경에는 부 및 소득의 분포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거나 개선되지 못했고, 특히 소득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전제가 있음.

-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의원안의 제안 이유는 공통적으로 상위 1%에 소득이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하고,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함.

(1) 우리나라의 부자 증세안

□ 2012년 1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38%로 적용하는 부자 증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⁵⁾하여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2013년 38%의 최고세율에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는 부자 증세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 중임.

- 현재 20대 국회에 부자 증세에 대한 법안은 6가지가 발의 중이고 모든 법안이 소득 상위자들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자는 것이며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박영선 의원안(더불어민주당):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

○ 김성식 의원안(국민의당):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41%, 45%로 함.

○ 제윤경 의원안(더불어민주당):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50%로 규정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실효세율을 40% 이상으로 규정

○ 노회찬 의원안(정의당): 종합소득과세표준 4천 6백만 원 초과 8천 8백만 원 미만 적용세율을 25%로 인상하고, 1억 5천만 원 초과 적용세율을 45%로 함.

4) 미국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을 촉구하면서 버핏세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음 (Stop Coddling the Super-Rich, The New York Times, 2011.8.15.)

5)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존의 감세정책에 따라 인하예정(35 → 33%)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을 뒤엎고 본회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안을 의결하였음.

[표 1] 부자 증세 법안별 소득세율 비교

(단위: %)

과세표준	2012년 법안	2013년 법안	박영선 의원안	김성식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	노희찬 의원안
1,200만 원 이하	6	6	6	6	6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5	15	15	15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24	24	24	24	25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35	35	35	35	35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8	38	38	45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1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9 (2017년) 40 (2018년) 41 (2019년)			45		
10억 원 초과					50	
비 고		현재 적용세율			10억 원 초과자 실효세율 40% 규정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 외국의 부자 증세안

□ 미국은 2016년 8월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이 상위 0.02%(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에 43.6%의 세율을 적용하고,⁶⁾ 연소득 100만 달러(약 11억 1200만 원) 이상의 자에게는 최소 30% 이상 과세하는 내용의 버핏세를 신설한다고 공약을 발표하였음.⁷⁾

- 한편, 2012년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안과 함께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자에게 최저한세율을 적용(30%)하는 내용의 버핏세 도입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같은 해 4월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⁸⁾로 부결되었음.

- 미국의 부자 증세(버핏세)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부자 증세와 조금 다른 모습임. 우선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는 점과 그 주장의 배경이 된 과세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름.

- 6) 현재 미국 소득세율은 10~39.6%의 7단계 세율 체계이며,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은 406,751 달러(약 4억 5600만 원) 이상임.
- 7) 이에 반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소득세를 12~33%의 3단계 체계로 단순화 및 세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놓았음. 법인세율도 3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함.
- 8) 민주당은 버핏세로 인해 1,710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공화당의 조사의뢰 결과 미국 연방상원 합동 세제위원회는 10년간 310억 달러 증세를 예측하여 미미한 영향이라고 했음(Buffett Rule Would Generate Less Than \$3 Billion Per Year In Revenue, 2012.3.20., <http://www.outsidethebeltway.com>)

- 미국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소득에 비해 최대 15%p까지 낮아 자본이득의 비중이 큰 부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적어지는 개인소득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에 대해 분류과세하고 있고, 부동산양도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지만 단기양도 등에 대해서는 중과하고 있음.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일부대상은 제외한 채⁹⁾ 10~30%의 세율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도 매도 시 부과(0.3% 세율)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12년 5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약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1→45%)¹⁰⁾과 100만 유로(약 12억 45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의 세율 적용 등 부자 증세를 시행하려 했음.

- 이 중 소득세 최고세율은 인상되었고,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게 75%의 세율로 부과하겠다는 정책은 2012년 12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¹¹⁾로 개인이 아닌 기업이 10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수정하여 시행하였음.
- 2015년 1월 75% 소득세는 경제회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만 야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입 2년 만에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자동폐기되었음.
- 부자 증세를 통한 프랑스 정부의 세수 증대는 2013년 2억 6천만 유로, 2014년 1억 6천만 유로로 재정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었으며,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만 감소시켜 경기가 둔화되었음. 특히 프랑스 내 고소득자들이 국외로 귀화 또는 시민권을 획득하고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자본의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음.¹²⁾

□ 외국의 부자 증세와 우리나라의 증세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의 부자 증세는 자본이득세가 일반적인 소득세보다 우대되어 발생한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세에만 초점을 두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은 배제한 채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만 신설하였음.
- 미국은 현행 제도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고소득자의 자본이득보다 많은 세부담을 가지는 것이 불합리하여 고소득자의 세부담, 특히 자본이득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임.
- 프랑스가 부자 증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은 것은 반대여론보다는 실효성, 특히 세수 효과의 미흡이었음. 개인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아 기업 쪽으로 과세정책을 전환하였으나 세수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고소득의 임원 유출 등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입장에서 유능한 임원이 유출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매출부진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부진과 세수 감소는 당연한 결과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자 증세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9)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한하여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함.

10) 151,957유로(약 1억 8700만 원) 이상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임.

11)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가구 전체에 부과되는 다른 소득세와 달리 개인에게 부과하는 75% 소득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Decision no. 2012-662 DC of 29 DECEMBER 2012.,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

12) Taxe à 75%: Un bilan en demi-teinte pour la promesse emblématique de François Hollande, 2014.12.30., 20minutes.fr.

3. 소득세 최고세율 현황 및 고소득자 세 부담 비교 분석

(1) 최근 소득세율의 개정 추이¹³⁾

□ 소득세율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노무현 정부까지 인하해왔음.

-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하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함.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으며 1996년부터 시행됨.

-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최고세율을 36%로 4%p 인하하였음.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사업 의욕을 제고하려는 목적이었으며 2002년부터 시행됨.

-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최고세율 포함 구간별로 1%p씩 인하하였음. 국내경기활성화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이었으며, 최고세율 35% 적용은 2005년부터 시행됨.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개정 이유 참조

[표 2] 소득세율 변동 추이

(단위: %)

~1995년		1994.12.22. 개정 (1996~2001년 시행)		2001.12.31. 개정 (2002~2004년 시행)		2004.12.31. 개정 (2005~2007년 시행)	
400만 원 이하	5	1,000만 원 이하	10	1,000만 원 이하	9	1,000만 원 이하	8
400만 원 초과~ 800만 원 이하	9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20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18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17
800만 원 초과~ 1,600만 원 이하	18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30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27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26
1,600만 원 초과~ 3,200만 원 이하	27	8,000만 원 초과	40	8,000만 원 초과	36	8,000만 원 초과	35
3,2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36						
6,400만 원 초과	45						
		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세율 인하		세율 인하	
2008.12.26. 개정 (2009년 시행)		2009.12.31. 개정 (2010~2011년 시행)		2012.1.1. 개정 (2012~2013년 시행)		2014.1.1. 개정 (현행)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35	8,800만 원 초과	35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초과	38	1.5억 원 초과	38
세율 인하 및 구간 조정		중위 구간 세율 인하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최고세율 구간 확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음.

-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8~26% → 6~24%)하였으나, 2012년에는 최고세율을 3%p 인상하였음.

○ 2008년 국제적인 세율인하 추세를 반영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율을 인하하였으며, 2009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하기로 함.

○ 2012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하하지 않고,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 원 초과로 신설하면서 38%로 인상함.

-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함.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와 함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1억 원 초과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인하(5 → 2%) 등을 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보조하였음.

(2) OECD 국가의 소득세율과 국제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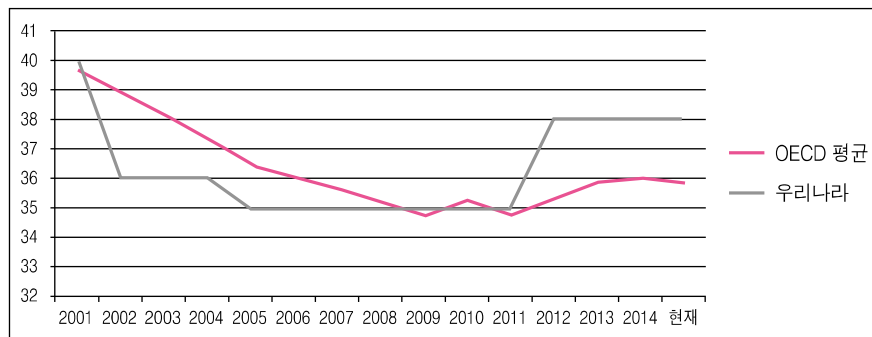
□ 현재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9%인데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더 높은 수준임.

-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거나 유사하게 유지되었지만, 2012년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5 → 38%)으로 인해 높게 되었음.

- 우리나라와 OECD 평균 모두 2000년 이후부터 경기활성화 및 외국 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해 감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반전된 모습을 보임.

[그림 1]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의 최고소득세율 동향

(단위: %)



자료: OECD Tax Database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소득세를 인상하였음.¹⁴⁾ 소득세 최고세율에 있어서 OECD 평균은 0.7%p 인상(35.2→35.9%)되었으나 우리나라는 3%p를 인상(35→38%)하여 OECD 평균의 인상폭에 비해 약 4배만큼 크게 인상하였음.

-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인상했으며, 그로 인해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더 높게 되었음.

(3)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의 누진 검토¹⁵⁾

□ 부자 증세 입법안의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에 대한 실효세율 및 세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자 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는 소득 상위 0.1%(근로소득)에서 0.8%(종합소득) 이내의 고소득자임.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인 고소득자의 실효세율¹⁶⁾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소득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그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30.2%이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자의 실효세율은 10.1%임. 종합소득세의 총 실효세율은 14.4%로 고소득자 실효세율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임.

- 근로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30.0%이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자의 실효세율은 4.3%임. 근로소득세의 총 실효세율은 4.9%로 고소득자 실효세율의 1/6도 안 되고 있음.

○ 종합소득에 비해 총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영향으로 보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70%,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를 공제하고 있음.¹⁷⁾ 근로

소득의 경우 결정세액이 없는 자(면세자)의 비율이 48.1%임.¹⁸⁾

- [표 3]에서 보듯이 2011년 귀속분 대비 2014년 귀속분의 실효세율은 2.6~2.9%p 상승하였음. 2012년 귀속분과 2014년 귀속분의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 실효세율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데 기인함.

○ 2012년 1월 최고세율 인상(35→38%)으로 2012년에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이 1~1.7%p 상승하였음.

○ 2013년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2014년에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이 0.8~2%p 상승하였음. 이는 소득공제가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효과가 크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됨.¹⁹⁾

14) 2009년과 비교해볼 때 OECD 회원국들은 4개국 인하, 16개국 인상, 14개국 유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15)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분석임(2015년 국제통계연보 자료, 국제청)

16) 실효세율: 결정세액 / 총급여액(근로소득), 결정세액 /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

17)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제1항)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18) 우리나라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1년 36.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2015년 세액공제가 추가적으로 확대되면서 2014년 귀속분의 면세자가 48.1%로 증가하였음.

19) 단순비교해보면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자가 1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액공제액 6만 원이지만, 3억 원 초과자가 1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38만 원의 세액공제액이 발생함.

[표 3]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 추이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종합 소득	결정세액	6,726,715	7,362,426	7,897,255	9,235,573	
	종합소득금액	24,366,095	25,103,020	26,830,702	30,555,652	
	실효세율	27.6%	29.3%	29.4%	30.2%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근로 소득	결정세액	2,258,507	2,442,107	2,715,834	3,380,438	
	총급여액	8,342,450	8,678,574	9,697,509	11,273,911	
	실효세율	27.1%	28.1%	28.0%	30.0%	

자료: 2012~2015 국세통계연보(국세청)

□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의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
으로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집중되어 있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는 종합소득세
납부자의 1%에 불과하지만, 종합소득세 총 결정
세액 중 차지하는 비율은 44.4%로 고소득자에 대
한 세부담이 높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의 종합소득금액
은 전체 소득자의 0.8%이고,²⁰⁾ 총 종합소득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은 21.1%임.

○ 종합소득세에서 고소득자의 소득금액 비율은
21.1%이지만 결정세액 비율은 44.4%로 2배 이상
차이가 보임. 고소득자는 소득 비중에 비해 소득세
납부 비중이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세부담이 누진
되어 있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²¹⁾는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0.2%에 불과하지만, 근로소득세 총 결정
세액 중 차지하는 비율은 13.3%로 고소득자에 대
한 세부담이 높음.

○ 근로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의 소득금액(총
급여)은 전체 소득자의 0.1%이고, 총 근로소득금
액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임.

○ 근로소득세에서 고소득자의 소득금액 비율은
2.2%이지만 결정세액 비율은 13.3%로 6배 이상
차이가 보이므로 종합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더욱
누진되어 있음.

○ 근로소득세 고소득자의 소득 대비 세부담 비중이
종합소득세 고소득자의 비중보다 큰 이유는 근로
소득공제나 면세자 비율이 높아서 실질적인 납부
자가 적기 때문임.

○ 우리나라 근로소득의 면세자 비율은 [표 4]에서 보
는 것처럼 주요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음.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과 고소득자의 세부담
이 높은 상황에서 볼 때, 우선 면세자 축소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여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
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20) '소득세 납부자'와 '소득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
공제나 세액공제·감면으로 인해 면세자가 발생해서 소득세
납부자가 줄기 때문임.

21) 연말정산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를 말함.

[표 4] 주요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비교

(단위: %)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비고
면세자 비율	35.0	33.5	28.6	15.4	48.1	* 한국·미국·일본 2014년 기준 * 캐나다·호주 2013년 기준

자료: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uac>),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gncy/stts>)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 자료 참고

[표 5]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 원 초과자)의 세부담 현황

(단위: 백만 원)

과세표준 규모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근로소득세 소득금액(총급여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3억 원 이하	5,012,372(91.2%)	114,227,065(78.9%)	14,172,685(99.9%)	507,615,985(97.8%)
3억 원 초과	40,180(0.8%)	30,555,652(21.1%)	17,668(0.1%)	11,273,911(2.2%)
소계	5,052,552(100.0%)	144,782,717(100.0%)	14,190,353(100.0%)	518,889,896(100.0%)
과세표준 규모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3억 원 이하	4,091,075(99.0%)	11,562,248(55.6%)	8,645,592(99.8%)	22,017,357(86.7%)
3억 원 초과	40,069(1.0%)	9,235,573(44.4%)	17,651(0.2%)	3,380,438(13.3%)
소계	4,131,144(100.0%)	20,797,821(100.0%)	8,663,243(100.0%)	25,397,795(100.0%)
비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중복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해서 비교하는 것은 제한이 있음			

자료: 2015년 국세통계연보(국세청)

□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음.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할 경우 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한다면 최고세율 적용자(고소득자)의 명목적인 세부담이 소득의 절반에 이를 것²²⁾이므로 고소득자의 세부담 편중이 심화될 것임.

-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0.2%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0.0%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의 7배에 달함. 또한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

22) 소득세 41%, 지방소득세 4.1%, 건강보험료 3.06% 등 총 48.96%에 달하게 될 것임

-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21.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높아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가 2.2%의 소득 비율로 13.3%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음.
- 최고세율이 인상되어 명목적인 세부담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이르게 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힘들어질 것임. 더 나아가 소득을 감추는 등의 탈세 또는 조세설계(Tax Planing)가 발생하게 되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4.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부자 증세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입장의 근거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낮으므로 일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복지재정마련을 하자는 것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이미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상당한 수준임.
 -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배 내지 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음.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

-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것, 즉 부자 증세는 세부담 편중을 심화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 시점의 부자 증세는 타당하지 않음.

- 소득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할 경우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세부담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이르게 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임.
- 프랑스의 부자 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부자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그리고 증세 논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및 세율 인상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재분배의 기능 외에도 재정건전성 및 복지재정 마련 확보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음.
-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시급함. 미국의 버핏세 논의의 중심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식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미비하여 과세일실이 발생하고 있음.
- 재원 마련, 즉 세수증대는 고소득자 같은 일부 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 가능하지 않음.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가 안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효과적이고 진정한 조세형평을 이루는 것임.

[참고문헌]

조경엽 (2016),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국세청, 2012~2015 국세통계연보.

Robert Shiller (2004), The New Financial Order – Risk In the 21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디어

한국경제신문, “피케티가 못 본 ‘부유세 함정’…저축률 떨어지고 國富 유출도 심각”, 2015.1.11.

Outside the Beltway, “Buffett Rule Would Generate Less Than \$3 Billion Per Year In Revenue”, 2012.3.20.

The New York Times, “Stop Coddling the Super-Rich”, 2011.8.15.

20minutes.fr, “Taxe à 75%: Un bilan en demi-teinte pour la promesse emblématique de François Hollande”, 2014.12.30.

웹사이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OECD Tax Database (<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프랑스 헌법재판소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